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조선의 다양한 언론 활동

/ 위원회 뉴스

2015년 제1차 공보담당자 ADR 연수 실시

재외동포 언론인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소개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사례집’ E-BOOK 발간

2015
05

Vol. 179



징검다리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징검다리 건너는 일이지요

아스라한 둔덕을 건너다보며

긴 한숨을 몰아쉬는 때

젖꼭지처럼 까맣게 반짝이는 별빛들

어미의 마음으로 누군가 괴어놓았을 징검돌들

건너가는 누구의 발걸음도 불안하지 않도록

흔들리는 가슴끼리 이리 내어주고 저리 텃대어서

하지 않은 약속처럼 아귀맞는 조약돌이 되어

사이사이 요리조리 끼워놓은 정성을 담습니다

아지 못한 그이의 지극한 마음이 길을 잡아줍니다

산다는 것 어찌 보면

같으면서 다른 우리끼리

이름도 없이 빛나는 은하수의 작은 별들처럼

이리 내어주고 저리 텃대어서

서로의 눈물을 괴어 징검돌이 되어주는 일이지요

열매의 기쁨을 위해

불꽃으로 스러져가는 저 꽃잎처럼

계절을 건너기 위해

가을의 징검다리가 되는 저 낙엽처럼

우리는 또 누구의 눈물을 담고

오늘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요.

전속

- '시와 사람' 신인상
- 시집 『나이드는 호미』 『눈물에게』 등
- 제3회 고운최치원문학상
- 2012년도 나주예술문화대상
- 제10회 광주편문학상
- <문장21> 책임편집위원
- 국제펜한국본부 간행위원
- 한국문협 문학사료 발굴위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린
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
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
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
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
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
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모바일웹 m.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Contents

2015 May Vol.179

- 04 역사 속 언론 조선의 다양한 언론 활동
- 06 문화가 산책 클래식 음악과 나의 감성을 잇는 다리, 표제
- 07 古典名句 “권권복응拳拳服膺, 이불실지而弗失之”
- 08 위원단상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 09 신 동의보감 자궁근종子宮筋腫
- 10 상담노트 연예인 보도와 사생활 침해
- 11 조정후기 못다 핀 꽃
- 12 지상중계 2015년 경기도론회 개최
- 13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5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조선의 다양한 언론 활동

1. 들어가며

“권력은 충구에서 나온다.” 20세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중국의 최고 실력자 모택동이 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권력은 언론에서 나온다.”로 수정된 지 오래다. 정권을 쟁취한 뒤, 쟁취한 정권의 유지가 최고의 목표인 지략가들이 엄청난 파괴력과 재 창조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언론의 힘을 모를 리 없다. 언론은 다루는 데 있어 고도의 테크닉과 타이밍을 요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언론은 권력의 도구로만 존재하는가. 대답은 물론 ‘아니다.’ 권력이 언론에 집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은 개인과 집단의 민주적 의견 개진과 수렴을 위해 무엇보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언론이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수단이며,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가시적인 접촉점이자 이음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언론인)에 흔들리지 않는 직필과 강한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막중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민주화되었다고 말하는 지금, 많은 매스 미디어 장치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들의 ‘홍밋거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류’라는 미명 아래 10대 연예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해프닝을 전국적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전통시대였던 조선의 언론은 어떠했을까?

2. 조선의 언론

흔히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라 여겨졌다고 생각하는 절대왕정체제 하의 조선에서도 언론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왕이 가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따라 붙는 사관이 있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사관의 붓은 왕권으로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는 카메라이자 녹음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왕은 물론 모든 관료들의 실비득실을 탄핵하는 언론기관이 있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나 정책 집행을 탄핵했다. 감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암행 감사가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된 오늘날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언론활동을 담당했던 중앙 정치기구가 별도로 운영되었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



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언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3. “전해! 아니 되옵니다.” – 신하들의 반론권, ‘상소’

펜은 칼보다 무섭고, 몇 방울의 잉크가 역사를 뒤집는다고 했다. 잠시의 힘에 굴복하기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은 붓을 가진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이상이 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소 문을 나서던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것 역시,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현직에 있든, 낙향하여 시골에서 생활을 하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예비관료군이든 자신이 처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국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다. 사극을 통해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 중 하나가 임금이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쳐 읽으며 ‘상소’ 운운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신하가 왕께 건의나 청원, 진정 등을 담아 올리는 문건이 바로 상소이다. 봉장(封章)·주소(奏疏)·진소(陳疏)·장소(章疏)라고도 불렸던 상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만만한 언로는 아니었다. 읽든, 읽지 않든 임금의 코앞까지 올라가는 문건인 만큼 절차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소는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상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단 각 군현의 수령이 문건을 수령하여 도의 감사에게 올리면, 감사는 중앙의 형조 또는 사헌부에 올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월소’라 하여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의 엄격성은 더욱 강화되어 후기에는 절차를 무시한 자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임금의 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때는 한성부가 형조의 관할이었던 노비에 관한 소송과 상소의 심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성부는 상소의 1심과 2심 기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상소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고쳐진 것도 있고, 간혹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상소의 본래 내용이 아닌 기사가 수록된 것은 실록 편찬 시 편찬관들이 내용의 일부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상소를 수록했다는 것은 지배층이 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상소가 지닌 역사에 보존할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는 임금에게 올리기까지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피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는 과정상의 한계도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 정국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왕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시정까지 도모했다는 점에서, 왕권을 견제하고 계층 상호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클래식 음악과 나의 감성을 잇는 다리, 표제

봄이다. 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계절감은 참 중요하다. 음식에도 절기가 있듯이 계절에 맞는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젊은 여인이 봄에 입을 노란 원피스를 구매하고 그 옷에 어울리는 노란색 표지의 시집을 고르는 손길처럼 봄에 맞는 음악을 고르는 건 가슴 설레는 일이다.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지인들에게 KBS 1FM (93.1Mhz)의 청취를 추천한 다음, 보통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어 보라고 한다. 계절과 그것을 담은 음악이나 모두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봄이 짙어지는 지금, 그래서 필자는 봄에 관한 클래식 음악 몇 곡을 추천해보려 한다.

봄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어 하는 클래식 곡이 있다. 비발디(1678~1741)가 작곡한 '사계(四季)'다. 독주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일종인 하프시코드가 함께 하는 '사계'는 음악 역사상 최초로 표제를 도입한 곡으로,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봄의 활기찬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곡이다.

둘러보면 '봄'이라는 단어가 표제에 붙은 곡들이 적지 않다. 하이든(1732~1809)의 '사계' 가운데에 '봄'이라는 제목의 악장이 있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의 '봄의 소리' 왈츠는 환희에 넘치는 봄을 상기시키는 경쾌한 선율이 인상적이다. 멘델스존(1809~1847)의 '무언가' 중 '봄의 노래'도 그렇다. '무언가'(無言歌)는 가사는 없으나, 가곡과 같은 선율과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사만 붙이면 그대로 노래가 될 수 있는 악곡을 뜻한다. 멘델스존은 이 곡을 원래 피아노곡으로 작곡했으나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무 악기로나 연주해도 되며 휴대전화 벨소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작곡가 글라주노프(1865~1936)의 발레음악 '사계' 중에도 봄의 음악이 있고, 베토벤(1770~1827)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의 표제 또한 '봄'이다.

● 베토벤의 봄

이러한 표제는 대개 작곡가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표제가 아니다. 보통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월광', '비창', '열정', '폭풍'이라고 이름 붙은 피아노곡이나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도 모두 마찬가지다. 문학적인 제목이 붙은 표제음악이 성행하기 이전인 그 당시에 부제가 붙은 곡들은 사실 출판되면서 베토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목이 붙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소나타에도 '봄'이란 부제는 원래 없었으며 나중에 불리게 된 별칭이다. 그만큼 이 곡에서 봄기운이 물씬 풍겨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봄'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베토벤이 작곡한 9곡의 교향곡 중에 봄을 떠올리게 하는 곡은 뭐니 뭐니 해도 교향곡 6번 '전원'이다. 1808년에 작곡하고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연주된 곡이다.

베토벤의 일과는 동이 틀 때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돼 오후 2시경까지 일을 한 다음 보통 저녁때까지 산책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모두가 잠든 밤중까지 산책이 계속될 때도 있었다 하니 그의 음악에는 작곡가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둘러본 자연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베토벤은 1악장의 악보에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이라 쓰고 전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악기들이 묘사하게 했고, 2악장 '시냇가에서'는 제목 그대로 시냇가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과 '폭풍', 그리고 '폭풍이 지난 후의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 3·4·5악장은 하나의 음악처럼 쭉 이어서 연주된다. 교향곡 6번 '전원'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즐긴 베토벤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시냇물의 재잘거림이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 천둥소리 등 자연의 모습이 음에 의해 생생하게 묘사돼 있는 이 곡은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간다.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권권복응 拳拳服膺, 이불실지 而弗失之” (중용)

원래 건망증은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깜빡하고 행길 것을 놓쳤을 때 “나이가 들다보니 자주 기억력이 나빠져서...”라며 말꼬리를 살짝 내리곤 했다. 요즘 건망증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중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거나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떠났던 곳을 다시 찾거나 중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나와서 전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다.

「중용」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중도에 따르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도’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화가 치밀면 참지 못하고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벌이곤 한다.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 등 각종 인연에 매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믿을 사람을 찾다보면 어느새 편한 사람을 찾게 된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아예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더라도 중요한 상황에 그 가치를 놓쳐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이나 지켜야 할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좌우명(座右銘)과 명심(銘心)이란 말이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명’은 사람이 늘 앉는 자리 근처에 글귀를 써두어서 수시로 보면서 자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고, ‘명심’은 아예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중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권권복응 拳拳服膺, 이불실지 而弗失之”의 구절이 있다. “가슴에 고이 간직해서 잃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지닐 때 가슴에 아이를 안은 부모처럼 두 손을 맞잡아 가슴팍에 대고 그것을 떨어뜨리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쓴다.

“권권복응”은 바로 이처럼 손을 가지런히 모른 채 가슴에 댄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주 깜빡깜빡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 스트라빈스키의 봄

‘봄’이라는 표제가 붙었다고 해서 마냥 사랑스러운 선율로만 된 건 아니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봄의 제전’에 담긴 봄의 빛깔은 좀 섬뜩하다. 아니나 다를까. 1913년 5월, 이 곡이 파리 상젤리제 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을 때 관중 가운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처음 몇 소절을 듣고 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그대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곡은 니진스키가 안무하여 러시아 발레단인 발레 뤼스가 선보였던 작품에 붙은 발레음악이다. 제물로 처녀를 바친다는 내용은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동적이라는 데 있었다. 그래서 막상 파날레인 산 제물의 춤에 이르러서는 분개하여 매도하는 자와 흥분하여 격찬하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로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있었다. 너무나 리듬이 격렬하여 발레가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 그때까지의 클래식 음악을 대담하게 파괴해 가는 불협화음과 리듬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심기가 불편해져서 연주회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관객도 많았다. 지금은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자주 등장하여 청중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당시에는 이런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불명예스러운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표제 음악은 이처럼 곡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설명하거나 암시하기에 클래식 음악의 초심자에게는 표제를 이용한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표제 하나로 음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초심자가 아니어도 표제는 음악과 듣는 자 사이에 놓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 KBS 1FM과 같은 전문 채널에서도 ‘봄’이 짙어지면 많은 이들이 ‘봄’을 탄다는 이유로, 전문가인 디제이도 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봄’이라는 표제가 붙은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인터넷은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웹으로 통합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식되던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순수한 통신형태는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영원히 보존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이버상의 또 다른 자아는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인가 아니면 탄생처럼 죽음도 맞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쇄매체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게 되는 구조였다. 반대로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보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털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였던 데 반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기억이 일반적이 되었고 망각이 예외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망각이 기본값이었던 과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각인되는 상황을 쇠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는 벤담(Jeremy Bentham)이 경고하고 있는 견고한 ‘원형감옥(파우티콘)’이 디지털화로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시간 검색과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편의 못지않게 사생활 노출과 과도한 가상세계 몰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기술·보관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 관련적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언론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게 되면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결정례나 판례의 집적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법제의 정립도 시급할 것이다.



자궁근종 子宮筋腫



자궁(子宮)은 달걀 크기로 표주박 모양의 서양배를 닮았다. 무게는 50~60g으로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편이다. 자궁은 배꼽에서 3~4cm 아래에 위치하며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있다.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나는 곳으로 자궁내막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신 시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내막(子宮內膜)이 두꺼워지게 된다. 보통 자궁내막의 두께는 5mm 가량이지만 생리 시기에는 혈관과 내막 조직이 1cm 가량 부풀어 오르게 된다. 생리 시에는 두꺼워진 내막조직과 혈액이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생리는 대략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지는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자궁 옆에 있는 난포에서 분비되며 에스트로젠은 자궁내막을 두껍게 만든다.

자궁벽은 바깥쪽의 장막과中间的의 근층과 안쪽의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의 대표적인 양성종양인 자궁근종(子宮筋腫)은 35세 이상 여성의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다. 자궁근종은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고 생리주기가 정상적인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자궁근종이 커지게 되면 방광을 압박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복부팽만, 출혈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얼굴의 홍조, 발한,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증상과 겹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나 불면, 불안, 우울증이 겹쳐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평소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오래 걷다 보면 밀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또한 허리통증이 생겨서 MRI를 찍어보면 근종의 크기가 커져 척추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곤 한다. 대개 월경 이상이 동반되는데, 출혈량이 많아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부정기 출혈(생리기간이 아닌 출혈)이 생기곤 한다. 배를 만졌을 때 복부에 응어리가 만

져지는 경우는 자궁근종 혹은 난소종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궁근종의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스트로젠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난소성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구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잘못된 식생활도 연관이 있는데, 자주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유제품, 술, 설탕,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에스트로젠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궁근종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생리 기간 전후에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나 직장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호르몬의 분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빠질 수 있다.

봄에 흔히 먹을 수 있는 쑥이나 민들레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며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좋게 한다. 사물탕(四物湯)이나 온경탕(溫經湯) 등 자궁을 튼튼하게 만드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핫팩을 아랫배에 얹는 등 온열치료로 효험을 볼 수가 있다.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치료와 온열 핫팩을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열치료는 면역기능을 좋아지게 하며 국부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여 통증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을 하면 아랫배의 혈류가 좋아지며 전신적인 건강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섬유질을 많이 함유한 채소나 과일, 곡류, 나물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고 야채 주스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발표가 있다. 카페인이나 설탕,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대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육체적인 노동량과 운동량이 적으며 과다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게 되므로, 평소 운동과 좋은 음식, 휴식과 치유를 병행해야 한다.

연예인 보도와 사생활 침해



연예인인 그녀는, 대중스타로서 많은 인기와 환호를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만큼은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고 싶어,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린 채 비밀리에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모 인터넷 신문사에서 그녀의 결혼 소식을, 본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했다. 결혼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숨기고 싶었던 결혼사실이 보도된 것 자체가 불쾌했다. 또한 그렇게도 바라왔던 조용한 결혼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화가 났다.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될 경우, 비록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언론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공적 인물, 즉 공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공인의 사생활은 공중의 정당한 알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한,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문제는 과연 누가 공인인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 중 몇 퍼센트 이상이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 공인이라거나 또는 TV에 연간 몇 회 이상 출연하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명쾌할까. 하지만 공인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공인인지, 연예인이 공인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내리는 판단을 잣대이자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판례는 연예인이 당사자가 된 일련의 사건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인기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대중스타의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연예인의 사생활이라고 해서 모두 여과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지, 가장 내밀한 영역의 사생활은 아무리 연예인의 그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는 “공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 존재하므로, 가족관계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지만,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도의 위법성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를 모두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그녀의 결혼사실이 보도된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조정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 불성립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어쩐지 기운이 빠진 목소리다.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못내 속상한 눈치다.

어쩌면 많은 연예인들은 본인의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지 모르겠다. 그녀가 동의 없이 결혼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불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따지고 보면 연예인 또한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종의 ‘직업’일 뿐이니,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의 위력이 가공할 만한 현대사회에서, 연예인은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인기를 누리고 그 인기를 통해 존재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사생활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것 또한 연예인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몫 아닐까. 어쩌면 그녀가 원했으나 포기해야 했던 “조용한 결혼식”은 그동안 누려왔던 인기와 명성에 따르는 세금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꽃



—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중이라도 유치원의 반론권은 필요

올해 초 인천 송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보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례가 연달아 보도됐다. 미약한 아동에 대한 도를 넘는 폭행 수위에 부모들은 아연실색했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확산됐다. 필자 역시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하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딸이 동시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연락을 받고도 수일을 고민했을 정도였다.

서울의 한 유치원인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신청인 유치원의 원아인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유치원의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수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특히, 사전에 부모로부터 아이가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경기(驚氣)' 병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주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경기 병력만 고지 받았을 뿐 구체적인 증상은 사고 이후에서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유치원은 사고 당일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일의 CCTV 장면을 분(分) 단위로 캡처하여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내려 교사의 손을 잡고 등원하는 모습, 유치원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교실에서 교사 및 친구들과 놀이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고 담임교사에게 안긴 채 이동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도 생생하여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다.

피로를 호소해 교실 한쪽에서 쉬게 했던 아이가 얼마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자 신청인 유치원도 적잖이 다급했던 것 같다. 담임교사는 아이를 둘러업고 원장실로 뛰어 내려갔고, 원장은 곧바로 119에 신

고했으며, 의무병 출신의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 구급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급히 인근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의사는 하필 점심식사 중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11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신청인 유치원에게도, 아이에게도 가혹한 시간이었다.

아이가 유치원 입학 당시 제출한 생활조사표에는 '경기를 앓은 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경기 증상이 수면 중 호흡이 서서히 멈추는 것이며, 피곤해하거나 졸려하는 것이 전조증상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학부모 상담 일지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청인 유치원로서는 오히려 '아이가 피곤해하면 잠깐 재워도 된다'는 학부모 의견에 따랐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져 억울할 법도 했다.

조정사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 유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이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난색을 표했으나, 보도에 신청인 측 반론이 미흡하게 반영된 점을 인정했다. 반론보도에는 신청인 유치원이 사고 이전에 아이의 경기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고, 아이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숨이 멎은 상태였는지'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는 중재부의 의견에 따라 반론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원만히 종결됐지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저버린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사고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끝내 엄마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은 또 오죽할까.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딸들을 꼬옥 안아줘야겠다.



2015년

경기토론회 개최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필요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4월 21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경기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이 된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언론중재제도는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된 현행 법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중인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지정토론자인 오광건
경기중재위원

발제를 맡은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홍문기 교수는 “이른바 복제·전송·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원 보도에 대한 1회적 성격의 정정·반론보도만으로는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된 보도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삭제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한 일괄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위원은 “블로그

나 카페 등에 복제·전파된 기사의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등에 근거해 볼 때 법 개정 없이 현행법제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기사삭제 청구권 도입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자칫 언론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조정신청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이어서 토론회에 나선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은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기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뿐만 아니라 기사도 이러한 악성 댓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아, 악성 댓글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이근수
경기중재부장

한편, 사회를 맡은 이근수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부장은 “기사 삭제나 복제·전파 기사, 댓글 등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지역 언론사를 비롯하여 학계, 지자체,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뉴스
—
NEWS

2015년 제1차 공보담당자 ADR 연수 실시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언론대응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ADR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상황별 언론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보도자료 작성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기법, 미디어 변화와 조정중재사례, 언론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수강했다.

재외동포 언론인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소개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23일, 제14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를 참석을 위해 내한한 재외동포언론인협회 소속 재외동포 언론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을 한 위원회 이진숙 홍보팀장은 언론피해구제 절차,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언론조정중재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정보통신의 날, 정부 포상 각 수상



제60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방송통신 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세경 위원(서울제3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왼쪽)이 국무총리표창을,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지성우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4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한류 확산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영방송 재원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ABC협회 인증위원회에 위촉



이연 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은 4월 9일 열린 한국ABC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인증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증위원은 신문 등 모든 인쇄매체의 부수공사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인증 권한을 갖는다.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사례집' E-BOOK 발간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사례집」이 5월 초 발간된다. 사례집에는 작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주요 조정 · 중재신청 사례와 시정권고 현황이 수록되며,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량 접수 처리된 사건의 쟁점 및 진행경과, 결과 등을 별도로 분석해서 실는다.

사례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명예훼손 사례

■ 당사자 간 입장 차이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로 합의

A신문은 신청인인 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제’를 개정하고, ‘영화제 사전심’ 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들을 사실상 ‘사전검열’ 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등급제’는 다른 기관의 업무이고, 영화제 사전심의 방식을 개정하여 사전검열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등급제 및 사전심의 방식 개정’ 부분은 심리 전 신청취지대로 기사가 수정되어 심리 중에는 ‘신청인이 영화제 출품작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사전검열’이라는 표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신청인이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에 의거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제추천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

문을 게재해 줄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잘못된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B신문은 신청인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요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수조사했다고 밝힌 주요 사례는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측이 주요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전수라고 표현한 것은 통계적 오류이기에 바로잡고 공식통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중재부의 판단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 손해배상금 3백만원으로 조정성립

C방송은 공무원들이 실리곤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한다고 보도하면서 실리곤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몰래 촬영을 했으며, 신청인이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동조한 듯한 뉘앙스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신청인이 실리곤 손가락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의도에 맞추기 위해 신청인이 했던 말의 순서를 바꿔서 편집해 방송했다고 지적한 후,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에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삭제하고,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했다라도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

D방송은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신청인 가족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인터뷰에 응한 것은 사건 이해를 위한 참고용으로 답변했을 뿐이고,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등이 공개되었다며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들의 초상과 음성 등에 대한 신원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상 신청인들을 특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로부터 촬영·공표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도 없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의 없이 촬영 및 공표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백혜영

〈문화가 산책〉의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몇 년 전 피아니스트의 거장 백건우의 연주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인상 깊게 들어서 그때부터 클래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생각보다 연주회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클래식을 라디오나 음반을 사서 들어야 하는데, 사려고 보면 한두 곡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곡이 많아서 사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참 좋아요. 라디오로 들을 때는 컵가에 머무르게 하고 집에서 들을 때도 생활 속에서 녹인다고 생각하라는 말 명심할게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유현진

항상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오늘도 알차게 힘써주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  사람」을 보면서 늘 든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모든 기사들이 한결 같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 동의보감〉에 소개된 '발효식품과 유익균'을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몸은 유익균이 필요한데 이를 발효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썩어들어 갈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사회에 유익한 언론이 생기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익한 발효식품이 돼주세요!!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 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 및 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 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 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서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